

제 563 호

1976.7. 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 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5-6090

시 보

이 인공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인쇄물로 인쇄되었습니다.
1976. 5. 15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차 례

◎ 조 례

제 1051 호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 3

제 1052 호 서울특별시음반판매업자 등록 수수료 징수조례 ... 3

◎ 훈 령

제 452 호 서울특별시 고용원 인사관리규정중 개정규정... 5

제 453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종사원 급식 규정중 개정규정... 6

◎ 고 시

제 145 호 동청사위치변경고시 6

제 146 호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허가 6

제 147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지하도) 신설결정 및
지적승인 7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49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8
제 150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부변경 지적승인	8
제 153 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위치 고시	9
제 155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	9
제 156 호	하천점용 (취수정) 허가	10

◎ 공 고

제 14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0
제 143 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승인 신청공고	13
제 14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공고	13
제 14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4
제 14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5
제 149 호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17
제 34 호 (마포구공고)	동장직인 개인공고	17

◎ 사 령 18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춘 인

1976년 7월 6 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51 호

서울특별시 공원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원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9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시장은 제 1 항 각호에 해당될 때
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4 중 「두꺼비차」란 다음에
「뱃데리카」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비공원 관리청의 사용료 (어린이 대 공원) —

구 분	대 인	소 인	비 고
뱃 데 리 카	120 원	60 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음반판매업자등록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춘 인

1976년 7월 6 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52 호

서울특별시음반판매업자
등록 수수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음반판매업자 등록 수
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음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신청을 하는자는 수수료로 수입 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음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의 등록신청 : 1,000 원

2. 음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의 변경등록 : 500 원

3. 음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 (판매업자의 변경등록 신청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500 원

제 3 조 (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고용원 인사관리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 년 7 월 6 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서울특별시훈령제 452 호

서울특별시고용원인사관리
규 정 중 개 정 규 정

서울특별시 고용원 인사관리 규
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 표 1 고용원 (잡급직원 포함) 채
용자격기준표중 「경비원」란,
「수위」란과 「사진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 종	분 야	자 격 구 분
경 비 원 수 위 사 진 사		1. 국민학교 졸업이상인 자 1. 국민학교 졸업이상인 자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로서 당해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중학교 졸업이상의 자로서 당해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국민학교 졸업이상의 자로서 당해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부 칙 이 규정은 1976 년 5 월 16 일로 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시립병원종사원 급식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 년 7 월 6 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서울특별시훈령제 453호

서울특별시립병원종사원
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립병원종사원급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급식) ①소속병원 장은 종사원중 근무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 일 3 회의 식사를 직접

취사 급식하도록 한다. 다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비근무일에도 급식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급식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45 호

동청사 위치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 3 동 사무소 위치가 다음과 같이 임시 변경 되었기 고시합니다.

다 윤

구 명	동 명	위 치		이 전 일 자
		변 경 전	변 경 후	
성북구	삼선제 3 동	성북구삼선동 2 가 42	성북구삼선동 1 가 144-2	76.6.27

◎서울특별시고시제 146 호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32 호 (76.6.17)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운동장)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54 호 (73.11.8) 의 규정에

1976. 6. 25.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가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종로구청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 6. 2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종로구 구기동 151
의 2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운동장)

3. 면적 및 규모 : 6,159 m^2

4. 시행자 주소성명 : 중구 충무로 4
가 125-1

주식회사 대농 대표이사 박용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일주
일이내

나. 준공예정일 : 76. 9. 30.

6.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종로구청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147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지하도)
신설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지하도)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대통령령제 7754

(75.8.22)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76. 6. 26

서울특별시장

가. 지하도 시설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폭원	연장	면적
신설	구내무부앞지하도 (지하상가 겸용)	을지로 2가 구내무부앞	10.7m - 25.4m	72 m	1,490m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49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학교) 를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6 호 (74.1.5)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 6. 29.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서울대학교	관악구 봉천동 산 12 부근 일대	3,536,943	증 245,080	3,782,023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50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부변경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에 대하여 건설부 고시제 82 호
(76.6.11) 로 일부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제 10 조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13 조에 의하
일부변경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6. 29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변경 고시내역					
구 분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기정면적	변 경	변 경 후
변 경	화 곡 공 원	영등포구 화곡동 산 108-7	21,500	감 21,500	
"	청량리 공 원	동대문구 청량리 동 산 5 - 1	1,217,119	감 2,323	1,214,796
"	관악산 공 원	관악구 봉천동 산 11 일대	16,191,726	감 245,080	15,946,640
※ 도면은 서울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153 호			제 2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립부녀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위치고시			복지관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설치조례			1976. 7. 1		
가. 기관의 위치			서 울 특 별 시 장		
기 관 명		위 치			
종로 부녀 복지 관		종로구 송인동 55 - 2			
중구 부녀 복지 관		중구 향학동 1010			
◎ 서울특별시고시제 155 호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 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결정 및 지적 승인			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청사) 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시민봉사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및 동법 제 13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7. 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시설 (공용의 청사) 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공 용 의 청 사 (서대문구청사)	서대문구 연희동산 4-32 일대	5,078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56 호 하천점용 (취수점) 허가 하천점용 (취수점) 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하천법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 1976. 7. 7 서울특별시장 1. 허가년월일 : 1976. 7. 7 2. 허가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35-2 앞천 3. 공사의 종류 : 취수점 1기 급수관 150 mm - 160 mm 점용평수 26.69 평 4. 목적 : 농업용수 확보 5.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3 개월 6. 착준공예정일 : 허가일로 부터	10일이내 착공 허가일로 부터 3 개월이내 준공 7. 수허가자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35-2 최화식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4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118 호 (76.5.27) 로 고시된 양재천 및 탄천 제방 축조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6.

서울특별시

공 란 개 요

1. 사업장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양재천 및 탄천 제방 축조 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제방연장=1,250
나. 호안부력=6,500 다. 기타 부대공1식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1976.7.21 ~ 1977.6.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제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사 유 토 지 조 서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6 의 1	잡	20	경북달성군현풍면 성하동 497	구암학원	
16 의 2	"	584	"	"	
17 의 1	전	87	강남구대치동 398	이 종 락	
17 의 3	"	415	"	이 종 락	
18 의 2	"	15	"	김 종 수	
18 의 3	잡	274	경북달성군현풍면 성하동 497	구암학원	
18 의 4	"	354	"	"	
19 의 2	"	176	"	"	
21 의 6	전	7	부산진구천포 1 동 680	김 용 해	

21-12

제 563 호

시

보

1976. 7. 6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36 의 1	전	370	강남구 대치동 89	김 춘 식	
21 의 5	"	28	강남구 대치동 133	김 중 진	
35 의 1	"	70	강남구 대치동 89	김 춘 식	
34 의 4	"	254	강남구 대치동 102	김 홍 식	
34 의 6	"	253	강남구 대치동 89	이 택 기	
33 의 2	"	119	강남구 대치동 104 의 1	이 종 용	
44 의 5	"	391	강남구 대치동 105	이 선 기	
3 의 1	잡	1,789	경북달성군 현 풍면성하동 497	구암학원	
3 의 3	"	1,301	"	"	
3 의 2	"	509	서대문구 대현동 90 의 47	박 문 배	
3 의 5	"	201	"	박 문 배	
4 의 9	전	2,400	영등포구 화곡동	김 재 현	
4 의 8	"	148	강남구 대치동 96	이 두 영	
4 의 7	전	175	강남구 대치동 96	이 두 영	
4 의 6	"	96	관악구 반포아파트 82동 302	김 용 배	
4 의 2	"	68	"	김 용 배	
4 의 5	"	100	강남구 대치동 105	이 응 기	
4 의 1	"	5	강남구 대치동 89	임 간 영	
계		10,219 평			평당 8,000× 10,219 평 = 81,752,000

◎서울특별시 공고제 143 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승인신청공고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굴착하여 지하시설물(상, 하수도 전력 전화케이블, 가스관등을) 매설코저 할때에는 도로법 제34조에 의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76. 6. 29.

서울특별시장

1. 신청대상 : 서울시행정구역내에 있는 모든 도로의 굴착
2. 신청기간 : 76.7.1 ~ 7.30
3. 구비서류 : 1) 신청서 2부 (본청 도로보수와 및 각구청 토목과에 비치)
2) 위치약도 : 2부
4. 접수처 : 공공기관 : 서울특별시도로보수와
일반인 : 관할구청 토목과

1. 지정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6년 수출목표액
442	중앙전자공업사	변봉덕	성동성수동 1가 13 ~ 445	인터폰인터컴	\$ 382,000
505	일진용단기	김성환	성북 길음동 877 ~ 137	가스용단기	\$ 146,500

5. 특기사항 : 1) 위기간내에 신청을 하고 공사시행시에는 별도로 당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 전기, 상수도, 하수도등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 사항도 수용가인 일반인이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굴착승인을 할 수 없아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고제 144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1976. 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4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177 호 (62.12.8 및 동고시제 365 호 (73.9.5)로 고시된 수표동 가각정비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조 및 동법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7. 3.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장위치 : 중구 수표동 92 의 3 일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수표동 가각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B = 2 m - 9 m
나. L = 100 m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6.7.25 ~ 77.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이 동 지 조 서 (부)

토지소재		원					현					비	년	소	유	자
구	동	지	지	지	기	등	지	지	지	기	등	준	및	주	소	성
		번	목	적	준수확 량 또는 임대가격	급	번	목	적	준수확 량 또는 임대가격	급	지	일유			명
중	수표						92 의 3	대	28.4		80			낙원동283의10		박관영
	"						91 의 11	"	24.6		"			와룡동63의2		최효숙
	"						91 의 13	"	4.9		"			91 의 1		김윤식
	"						91 의 15	"	9.1		"			91 의 1		장병은
														중립동 171		남진원
														상		동

토지소재		원					현					비	년	소	유	자
구	동	지	지	지	기준수확 량 또는 임대가격	등	지	지	지	기준수확 량 또는 임대가격	등	준	월사	주	소	성
번	목	적	급	번	목	적	급	번	목	적	급	지	일유	소	명	
중	수표							91의7	대	13.6		80		광희동가39	조 정	
"	"							91의8	"	23.1		"		91의8	윤계화	
"	"							66의3	"	15.0		"		66의3	방종길	
"	"							66의2	"	10.0		"		66의2	김종만	
"	"							65의2	사	15.0		"		맹천동31	채단법인 기독교 대한합리회	
"	"							63의3	대	7.8		"		서대문구만 리동154의15	김춘식	

건 물 조 서

토지소재		원					현					비	년	소	유	자
구	동	지	지	지	기준수확 량 또는 임대가격	등	지	지	지	기준수확 량 또는 임대가격	등	준	월사	주	소	성
번	목	적	급	번	목	적	급	번	목	적	급	지	일유	소	명	
중	수표	92와3	목조와즙	19.63				주	택					외릉동163의2	최 효숙	
"	"	91의8.10	목조와즙	2.1				창	고	32.9				낙원동283의1	박 관영	
"	"	66의3	목조와즙	11.23				주	택	30.0				수표 91의8	윤계화	
"	"	66의2	목조와즙	30.0				주	택	18.0				66의3	방종길	
"	"	66의2	목조와즙	18.0				주	택	17.0				66의2	이능목	
"	"	63의3.4	목조양철 면 와조 스레트	7.0				주	택	30.0				만리동2가		
				10.0				공	장					154의15	김춘식	
				30.0				주	택							

○서울특별시공고제 1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541 호(71.9.13)

로 고시된 천호대교 접속도로(성내동측) 신설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저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 도서는 천호출장소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7.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장의 위치 : 강남구 천호동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천호대교
접속도로 (성내동측) 신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B = 25 ~ 50 m
4나. L = 850 m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6.7.25 ~ 77.9.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
주소, 성명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 할 전 표 시			분 활 후 표 시 (수용대상)			소 유 자		관 제 인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1	천호동	434-3	대	192	434-5	대	134	동선 3 가 258	안 한 북	
2	"	442-32	"	370	442-32	"	58	을지 1 가 160	주식회사 미릉상사	
3	"	434-4	"	353	434-6	"	166	동선 3 가 258	안 한 북	
4	"	432-1	"	418	432-4	"	396	"	"	
5	"	432-3	"	463	432-3	"	17	"	"	
6	"	425-63	"	1,651	425-71	"	43	"	"	
7	"	427-3	"	340	427-58	"	78	"	"	
8	"	428-	"	425	428-2	"	96	용산구 남영 8-2	조 의 행	
9	"	429-2	전	414	429-15	전	179	성 내 55	임 정 주	
10	"	431	잡	920	431-1	잡	251	안암 5 가 101-21	김 지 수	
11	"	430-16	대	65	430-27	대	52	연희동 446-52	한 명 준	
12	"	430-9	"	182	430-28	"	9	천호동 403	조석득외 12	
13	"	430-20	"	346	430-29	대	85	송정동 73-61	조 점 순	
14	"	433-1	전	26	433-1	전	26	동선 3 가 258	안 한 북	
15	성 내	67-1	대	651	67-3	대	155	성 내 63	합자회사 광성요업자	
16	"	66-1	"	551	66-3	"	265	미 아 317-7 " 319-41	업 덕 기 김 정	
17	"	65-1	"	77	65-1	"	66	미 아 317-7	업 덕 기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9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
지 정 공 고

1. 서울특별시 김포, 시흥, 화양추
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
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0 호 (76.
6.3)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
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 동법 제 47 조와 항정권
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제 11 항제 3 호에 의거 변
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에 따라
환지에정자를 지정하였기 공고한
다.
2.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
과와 관할구청 및 출장소에 비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인다.
3. 조서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
게 통보할 것이나 미수행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써 갈음한다.

1976. 7.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34호

동장직인개인공고

서울특별시 동인규칙 제 5 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 직
인을 개인하였기 동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

1976. 6. 30

마 포 구 청 장

1. 개인대상동 : 아현제 1 동, 대흥동
합정동, 성산동
2. 개인사용일시 : 1976.7.1 09:00
3. 개 각 인 형

아 현 제 1 등		대 흥 동	합 정 동	성 산 동
직 인	제 인	직 인	직 인	직 인
				
사 령 ◎ 1976.6.22 공 원 과 지방농림 강 화 중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토목시험소 지방토목 서 회 식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6.6.25 영 선 과 지방건축 김 춘 식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영 선 과 지방기계 전 성 호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영 선 과 지방건축 이 원 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영 선 과 지방기계 김 용 구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 1976.6.28 회 제 과 지방행정 강 병 섭 강남구군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 김 남 훈 토목시험소군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 안 기 환 주택개량과군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 정 상 념 주택개량과군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 박 회 진 하수과군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 박 상 익 치수과군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 기사보	노 의 영	관 악 구 지방농림 기사	이 의 성
시설관리과근무를 명함.		복지울 명함.	
주택개량과 지방토목 기사	나 성 수	관악구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농림 기사	윤 강 배
● 주택개량과 지방토목 기사보	지 도 영	복지울 명함.	
구획정리과근무를 명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시설관리과 지방토목 기사보	박 필 용	보건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정 순 섭
구획정리과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결정에 따라 76.3.24자	
도로시설과 지방토목 기사	천 혜 봉	발령제 161 호 징계처분 (건책)	
구획정리과근무를 명함.		을 동일자로 취소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원	유 방 희	◎ 1976.7.1	
구획정리과근무를 명함.		영 선 과 지방전기 원	김 경 식
주택건설 지방토목 사업소 기사보	조 중 식	복지울 명함.	
구획정리과근무를 명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방토목 기사보	권 경 수	영 선 과 지방전기 기원보	김 기 병
도로시설과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성 동 구 지방토목 기사보지보	한 상 주	중 기 관리 지방기계 사업소 기사보	송 태 군
도로시설과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 1976.6.30		제 1 항 제 1·2 호의 규정에	
● 동대문구 지방건축 기사	심 수 섭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 따라 76.4.14 (발령제 204 호)		성 동 구 지방토목 원	이 춘 원
파면처분을 동일자로 변경 건책 에 처함.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제 1 항 제 1·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신 홍 권

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초임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도봉구수습행정관에 보함.

◎1976. 7. 3

성북구보건소 이 종 화

성북구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소 장 조 정 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976. 7. 5

산업국양정과 행정주사 김 흥 만
행정사무관에 임함.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
를 명함.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유 동 주
서기관에 임함.

재무국관제과장에 보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사무관 정 재 택
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내무국행정과 행정사무관 김 창 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마 포 구 행정사무관 박 화 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

◎1976.7.6

공 업 과 지방행정 이 공 수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성북구근무를 명함.

어린이대공원 지방행정
서 장 동 하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종 로 구 지방행정 최 춘 간
주 사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예산담당관 지방행정
사 무 관 장 준 협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1976.7.7

용산구(새마을
노임소득사업주
진본부과전출) 지방행정 유 명 수
주 사

운수 1 과근무를 명함.

민 방 위 과 지방행정 이 한 규
주 사 보
운수 1 과근무를 명함.

순찰담당관	지방행정 주사보	정경환	새마을지도과근무를 명함.
운수 1 과	지방행정 주사	지병진	(새마을노임소득사업추진본부파견)
순찰담당관	지방행정 주사	임생규	영등포구 지방행정 사 이보규
운수 1 과	지방행정 주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라 76.3.12
민방위과	지방행정 주사	차재문	자 발령 제 125 호 징계처분 (견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서울특별시장